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돌봄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등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7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개요	1
II. 총괄적 검토	5
1. 제정안의 입법배경	5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3. 총괄 검토의견	12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9
III. 주요 내용별 검토	21
1.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 등	2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8
3. 돌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33
4. 돌봄지수 및 돌봄정보관리시스템	38
5. 돌봄위원회	42
6. 돌봄기금	46
7. 돌봄의 날	49

I. 개요

1.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7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6. 17.
- (3) 회 부 일 : 2025. 6. 18.

나.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이자 지향해야할 가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며, 돌봄의 가치를 사적 영역에 방치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해옴.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면서, 돌봄은 공공적 가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규율하고 있으나, 돌봄의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는 인식을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

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돌봄의 공공성·보편성을 확보하고 통합 돌봄체계를 정착시키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분담과 돌봄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돌봄의 관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청장이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청장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라. 참고사항

이 법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우리 사회는 소득수준 향상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돌봄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²⁾, 이후 사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왔으나,

팬데믹(COVID-19) 이후,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폐쇄로 인하여 공적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이용되는 사적 서비스 체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돌봄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었음.

당시 정부는 돌봄 관련 수당 및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돌봄공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³⁾, 이와 같은 대응은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2021.7.7.,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공공연대노동조합, “코로나19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토론회”, 2020.12.17.

2)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권제3호, 2010

3) 손지현, “기본권으로서 돌봄에 대한 고찰: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의 관점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3권제2호, 2022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돌봄책임이 개별 가구에게 있다고 보면서 돌봄을 단순히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보기보다는 삶의 필수 영역으로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고,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도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 구성원을 안정적으로 지속·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한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돌봄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8년~2019년 전체 취업자가 2,404만 5천명에서 2,750만 9천명으로 1.1배(364만 4천명) 증가한 사이 돌봄종사자는 58만 3천명에서 110만 1천명으로 2배(51만 8천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돌봄종사자의 경우 일반 취업자에 비해 높은 임시직 비중, 낮은 임금수준,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이에, 제정안은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고 아동·노인 등 특정 계층이나 장애·보육 등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도움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이자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하려는 취지에서,

4) 김원정, 임연규,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2008~2019 돌봄노동자 규모와 임금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8.13.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돌봄지수, 돌봄기금 등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총 5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제정안의 목적과(안 제1조), 기본이념(안 제2조), 돌봄·비공식 돌봄·돌봄당사자·돌봄노동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3조), 돌봄권의 차별 금지(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및 국민의 책무(안 제6조),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이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과(안 제8조), 돌봄의 공공성 강화(안 제9조) 및 보편성 확보(안 제10조), 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을 금지(안 제11조), 돌봄의 가치 증진(안 제12조), 비공식 돌봄 인정(안 제13조)을 명시하며, 돌봄노동자의 보호(안 제14조),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안 제15조), 돌봄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안 제16조),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안 제17조), 돌봄의 관계성 강화(안 제18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은 돌봄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안 제19조·제20조), 관련 업무의 협조(안 제21조) 및 실태조사(안 제22조)를 규정하고,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지수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안 제23조), 돌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며(안 제24조·제25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안 제26조)와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안 제27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4장(돌봄기금)은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8조), 기금의 용도 및 운영(안 제29조·제3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보칙)은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안 제31조)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2조),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안 제33조), 돌봄정책에 관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34조)을 하도록 규정하며,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안 제3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안 제36조) 및 돌봄정책에 필요한 지원(안 제37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금지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9조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제10조	돌봄의 보편성 확보
	제11조	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12조	돌봄의 가치 증진
	제13조	비공식 돌봄 인정
	제14조	돌봄노동자 보호
	제15조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제16조	돌봄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제17조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제18조	돌봄의 관계성 강화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	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1조	업무의 협조
	제22조	실태조사
	제23조	돌봄지수 등
	제24조	돌봄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4장 돌봄기금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
	제29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운영
제5장 보칙	제31조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3조	조사 및 연구
	제34조	민간의 참여
	제35조	돌봄의 날
	제3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7조	지원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권으로서의 돌봄권 정립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그리고 돌봄정책 기반 마련 등이 있음.

□ 우선, 제정안은 돌봄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엄의 시작이자 생활의 기반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존립과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표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돌봄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돌봄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건강상태,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적 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하도록 하고, 국민 역시도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 돌봄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음.

□ 다음으로, 돌봄권을 보호·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정책을 수립·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비공식적 돌봄 및 돌봄노동 등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돌봄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돌봄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등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돌봄기금을 마련하여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어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관련 법령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 돌봄의 날인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돌봄의존성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특정 대상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보기보다는 삶의 필수 영역으로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으며,

돌봄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⁵⁾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볼 수 있을 것⁶⁾이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돌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본권이란 대체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이해되는데, 돌봄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었다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서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사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대한민국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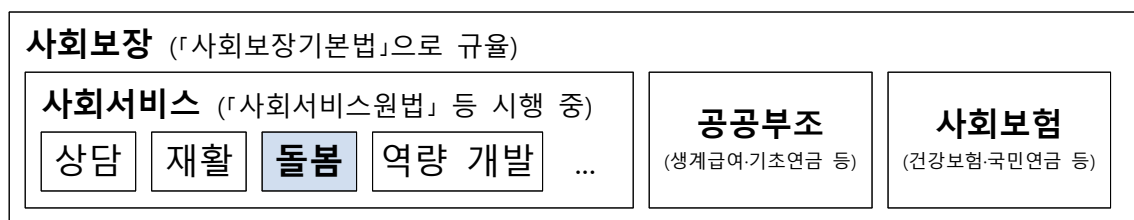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김희강,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제25권제2호, 2018

- 둘째, 돌봄 및 비공식 돌봄 등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규율 범위가 다소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로서, 돌봄을 상담, 재활,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보장기본법」⁷⁾에서는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돌봄의 개념이 기존 법률과 적정히 조화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함.

< 돌봄·사회서비스·사회보장의 개념·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현재 정부는 산모·신생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나 상황을 전제로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상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을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제정안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돌봄의 보편성과 대상 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주요 돌봄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일상돌봄·긴급돌봄서비스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발달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및 교육부의 영유아보육(어린이집)과 초등돌봄(늘봄학교) 등이 있음.

< 주요 돌봄사업 관련 소관 현황 >

소관 부처	소관 부서	사업명	근거법
복지부	출산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과	긴급돌봄서비스*	-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복지법
	요양보험제도과·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법
여가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늘봄학교정책과	초등돌봄** (늘봄학교)	-

* 일상돌봄·긴급돌봄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근거해 운영되나 직접적인 사업 근거 조문은 없음.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33)이 2025.7.14.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돌봄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적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하고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 제15조⁸⁾의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및 안 제17조⁹⁾의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안 제15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돌봄책임이라고 함은 자녀양육 또는 부모봉양 등 가족구성원으로 지는 책임과, 같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는 책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의 돌봄책임을 격차없이 분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7조의 경우 문맥상 미래 세대가 돌봄으로 인하여 삶의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돌봄책임만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언상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돌봄청 및 돌봄기금의 경우 정부 조직개편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79)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8) 「돌봄기본법안」

제15조(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연적인 돌봄 당사자로서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종교 등에 무관하게 돌봄책임이 격차 없이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돌봄기본법안」

제17조(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될 생활환경을 돌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돌봄정책 등을 운영하고,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돌봄기금을 운용·관리하여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돌봄청의 신설은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5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약 3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정부의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2,812	2,880	2,949	3,019	3,092	14,752
기관부담금	367	378	389	401	414	1,949
기본경비	208	213	218	223	229	1,092
자산취득비	179	0	0	0	0	179
합계	3,567	3,471	3,556	3,644	3,734	17,97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돌봄청 소관 사무 수행 인원 >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1국 1관 6과)	○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총괄 ○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 ○ 영유아 교원 양성, 정원·인사 관리 ○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65
	늘봄학교정책과 (1과)	○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 학교 운영	14
	계		79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1실 3관 11과)	○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 고독사 예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연금, 기초연금	116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 (1실 3관 14과)	○ 아동복지, 보호대상 아동 보호, 아동학대 방지 ○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16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1국 3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4
	장애인정책국 (1국 5과)	○ 장애인 복지, 인권 및 학대 대응,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건강	48
	계		349
고용 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1과)	○ 가사근로자1) 고용개선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운영 ○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 총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가사랑) 구축·운영	3
여성 가족부	가족문화과 (1과)	○ 아이돌봄 지원 정책 총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노무 관리 ○ 아이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3
	가족정책과 (1과)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민관협력	2
	청소년활동 진흥과 (1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2
	계		17
총계			4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210879) 비용추계서.

또한, 돌봄업무의 경우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연계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 내 각종 보건·복지 정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으로서의 ‘청’은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점에서,

돌봄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돌봄청이 신설되지 못하는 경우, 제정안은 돌봄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기본계획이나 돌봄지수, 돌봄정보관리시스템 등 구체적인 정책 기반은 마련하지 못하는 등 당초 입법 취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돌봄기금의 경우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210880)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 및 용도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¹⁰⁾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동 제정안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0)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생략)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돌봄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률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태, 기존 법률과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바 신중한 접근 필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절차, 위원회·기본계획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현금·현물·서비스 형태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제공원칙, 절차, 사회보장 지역계획 수립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체 사회보장 법체계 내 「돌봄기본법」의 위상과 역할, 「사회보장기본법」과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될 필요

또한, 발의안이 제시하는 ‘돌봄’의 개념·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있고, 돌봄청·돌봄기금 관련한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된바, 행안부·기재부 협의 필요

- (행정안전부) 법률안의 ‘돌봄위원회’는 법률안 정의에 따르면 ‘돌봄’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 ‘돌봄의 날’(매년 10.29.)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 검토하여 추진 필요가 있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면밀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임

- (기획재정부)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맞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음
- (법무부) 돌봄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제정안은 “국민”과 “돌봄당사자” 등의 용어를 여러 조문에서 혼용하는데, 권리 및 의무의 성격에 따라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보완할 필요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영양 및 식생활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의 핵심 요소이므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권의 범위에 식생활이 포함되어야 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돌봄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안 제1조),

돌봄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엄의 시작이자 생활의 기반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존립과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을 표명하며,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상호 의존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돌봄·비공식 돌봄·돌봄당사자·돌봄노동자 등을 정의하면서(안 제3조), 누구든지 돌봄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고(안 제4조), 동 법률이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함(안 제7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돌봄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돌봄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엄의 시작이자 생활의 기반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존립과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을 표명하며,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상호 의존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모든 인간이 사회에서 생존·발달·기능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활동 등을 말한다.
2. “비공식 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돌봄을 말한다.
3. “돌봄당사자”란 비공식 돌봄을 포함하여 제1호의 활동을 제공하거나 활동의 수혜받는 자 모두를 말한다.
4. “돌봄노동자”란 제1호의 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하는 돌봄 제공 사업 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5. “돌봄서비스”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을 말한다.
6. “돌봄제공기관”이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돌봄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7. “이용자”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돌봄권”이란 모든 사람이 돌봄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권으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 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 나.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성별, 연령, 환경, 종교, 가족 형태, 거주 지역, 장애 여부, 건강상태,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해 돌봄의 공적 가치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활의 기반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존립과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을 표명하며, 상호 의존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돌봄·비공식 돌봄·돌봄권 등을 정의하면서, 동 법률이 돌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음.

□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돌봄의존성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보기보다는 삶의 필수영역으로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고,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도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 구성원을 안정적으로 지속·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돌봄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돌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명시으로 규정하면서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역시 경시되지 아니한다¹¹⁾고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인정되고 있음¹²⁾.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입법자유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¹³⁾,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의 기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정한 권리를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사입법례¹⁴⁾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돌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돌봄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확인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본권과 법률적 권리의 구별 실익은 특히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¹⁵⁾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2) 1991. 5. 13. 90헌마133 전원재판부, 2005. 7. 21.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13) 이장희,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 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권1호, 2015.

14) 「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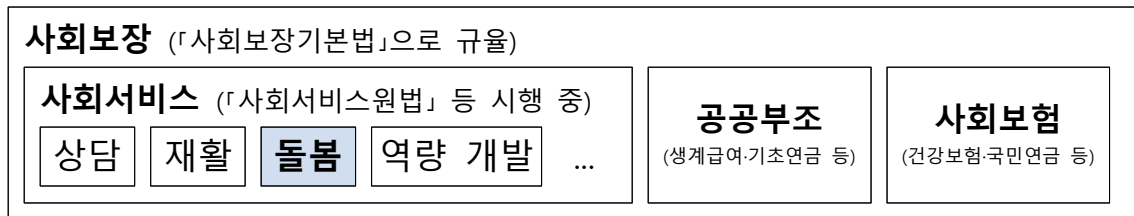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둘째, 「돌봄기본법」의 위상과 관련하여 돌봄 및 비공식 돌봄 등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규율 범위가 다소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¹⁶⁾에 따르면, 돌봄은 현재 사회보장의 하나인 사회서비스로 정의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절차, 위원회 및 기본계획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¹⁷⁾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¹⁸⁾,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¹⁹⁾등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돌봄·사회서비스·사회보장의 개념·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 1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1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1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1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정안은 돌봄을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로서,

돌봄을 상담, 재활,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률에서 인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의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돌봄과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 등이 있음.

< 돌봄 관련 법률(안) 현황 >

대상	법률(안)	돌봄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일반	건강가정기본법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지원 등	
	가족돌봄 등 위리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등	2026.3.26.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지원 대상자* 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 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 등	2026.3.27. 시행 예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2210313)	돌봄노동자 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인 사람) 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아이돌봄 지원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12세 이하 아동) 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유아보육법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돌봄 지원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장애인 등)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 다양성 확보	2027.3.19. 시행 예정
노인	노인복지법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노인학대금지 등 노인의 보건의복지 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정 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하고, 돌봄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안 제5조),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돌봄관계를 성립·유지하고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인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당사자 및 돌봄유관자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안 제8조),

돌봄의 공공성 강화(안 제9조), 돌봄의 보편성 확보(안 제10조), 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안 제11조),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보상(안 제12조), 가정 등에서의 비공식 돌봄 인정(안 제13조), 돌봄노동자의 보호(안 제14조), 모든 국민이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안 제15조), 돌봄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돌봄당사자 및 민간의 참여(안 제16조 및 제34조),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안 제17조), 돌봄당사자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립 예방(안 제18조),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연구(안 제32조 및 제33조), 돌봄 관련 국제교류의 활성화(안 제36조) 등을 규정함.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적 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돌봄관계를 성립·유지하고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인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식 돌봄을 행하는 사람(이하 “비공식 돌봄제공자”라 한다)·비공식 돌봄을 받는 사람(이하 “비공식 돌봄수혜자”라 한다),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이용자 가족 등 돌봄당사자 및 돌봄유관자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9조(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안정적인 공적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의 보편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격차 없이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거나 돌봄책임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의 가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공식 돌봄 인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등에서의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사회경제적 안정 속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등에서의 비공식적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돌봄노동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15조(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연적인 돌봄당사자로서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종교 등에 무관하게 돌봄책임이 격차 없이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돌봄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을 포함해 돌봄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돌봄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될 생활환경을 돌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돌봄의 관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진작하여 돌봄당사자의 돌봄당사자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립을 예방하고 신뢰 및 연대의 저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권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면서, 이에 대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성 확보, 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의무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돌봄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적 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하고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5조²⁰⁾의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안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결국 성별·연령·종교 등에 무관하게 돌봄책임이 격차 없이 분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돌봄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돌봄책임이라고 함은 자녀양육 또는 부모봉양 등 가족 구성원으로 지는 책임과, 같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20) 「돌봄기본법안」

제15조(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연적인 돌봄 당사자로서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종교 등에 무관하게 돌봄책임이 격차 없이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는 책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돌봄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가정의 돌봄책임을 격차없이 분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7조²¹⁾의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안 제17조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 ‘생활환경’ 등의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이것이 돌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문맥상 제정안의 취지는 미래 세대가 돌봄으로 인하여 삶의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돌봄책임만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돌봄기본법안」

제17조(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될 생활환경을 돌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돌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9조), 3년마다 돌봄당사자의 규모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21조),

돌봄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20조),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돌봄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돌봄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돌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돌봄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24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돌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청장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돌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봄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실태조사) 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돌봄당사자의 규모 및 현황
 2. 돌봄이용자의 규모, 돌봄의 내용 및 새로운 돌봄 필요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제공기관의 분포, 규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규모, 노동조건, 처우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
 5. 비공식 돌봄 현황, 비공식 돌봄제공자 및 비공식 돌봄수혜자의 분포, 비공식 돌봄 시간, 비공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돌봄청장은 국민이 돌봄정책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에 대한 보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돌봄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와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당사자 및 돌봄이용자의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다른 복지정책 및 사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돌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돌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구체적인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다만, 돌봄은 기본적으로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²²⁾에

22)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다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²³⁾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유사입법례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²⁴⁾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99호, 시행일 2025. 10. 2.]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2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가 불일치하는데, 이는 최신의 자료를 통해 적시성 높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안 제23조에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 돌봄노동자의 처우·복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돌봄지표를 통해 국가의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는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본계획에 맞게 조정하거나, 돌봄지수 조사와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4. 돌봄지수 및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와 공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안 제23조),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및 제5장 보칙

제23조(돌봄지수 등) ①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와 공급, 돌봄노동자의 처우·복지 및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 정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돌봄지수 및 지역돌봄지수 조사 결과,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돌봄청장은 돌봄지표 및 지역돌봄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돌봄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돌봄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및 제5장 보칙

제31조(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제공자·비공식 돌봄수혜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이용자 및 돌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돌봄지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사업을 포괄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사업 단위로 제공기관 및 종사자·대상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돌봄 관련 통계 자료 >

(단위: 개, 명)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결핵·한센	자활	복지관
시설수	37,790	25,929	6,489	4,074	421	138	6	250	483
종사자	549,695	448,702	34,673	44,802	3,892	1,949	103	2,827	12,747
대상자	278,387	222,435	12,489	27,074	9,680	6,501	208		

*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통계」 기준)

** ‘사회복지시설’ 조사 자료 기준인바, 어린이집 및 재가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관련 시설수, 종사자 등은 제외된 수치임

- 효과적인 돌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돌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돌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통계와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돌봄청장이 개발·보급한 돌봄지표와 이를 이용한 돌봄지수는 매년 조사·공표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는 기본계획에 활용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과도 이어지므로, 돌봄지표 및 돌봄지수에 대해서는 안 제24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입법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²⁵⁾.

25)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돌봄정보관리시스템) 제정안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제공자·비공식 돌봄수혜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이용자 및 돌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하고 안 제6조²⁶⁾에 따른 국민의 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분야의 연구 등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돌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비공식 돌봄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돌봄으로서, 그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및 관리로 불 여지가 있고, 자료 요청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6) 「돌봄기본법안」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력을 통해 돌봄의 공적 가치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돌봄위원회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고(안 제24조),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4조(돌봄위원회) ①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법령 개선 사항
6. 아동, 교육, 노동, 건강 등 분야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의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돌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고, 돌봄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음.

돌봄위원회는 돌봄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돌봄 관련 법령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함.

- 「정부조직법」 제5조²⁷⁾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²⁸⁾.

- 돌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으므로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음.

27)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돌봄을 모든 인간이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에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이고 신중한 추진 및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요건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돌봄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돌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돌봄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돌봄정책에 관하여 돌봄당사자가 돌봄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6조²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돌봄정책의 효과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돌봄도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돌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지역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³⁰⁾.

29) 「돌봄기본법안」

제16조(돌봄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을 포함해 돌봄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돌봄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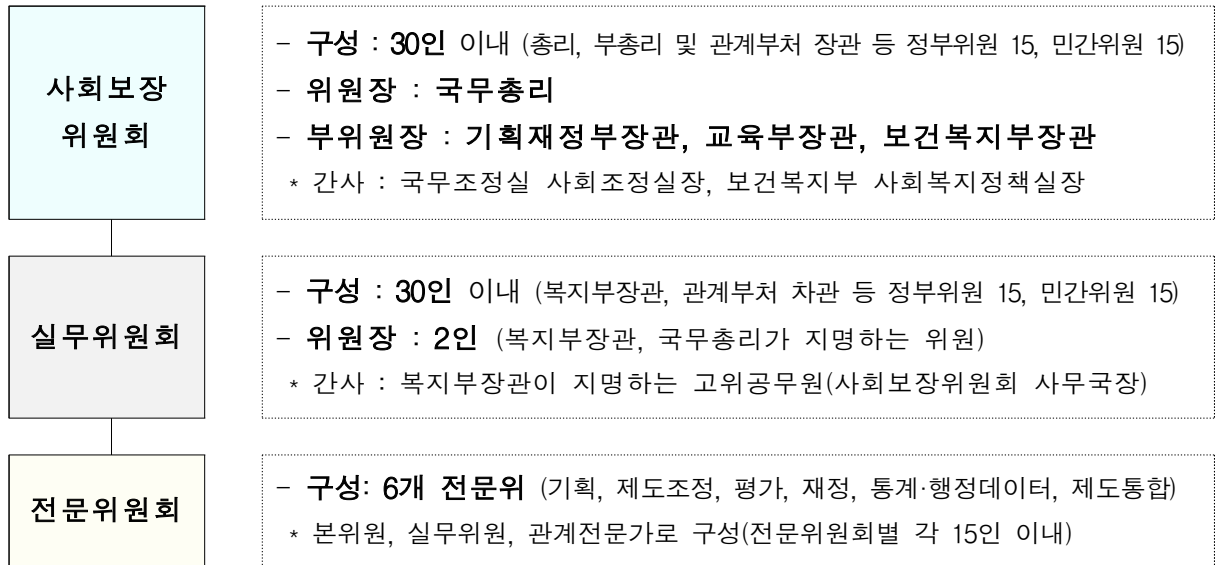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6. 돌봄기금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제4장 돌봄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돌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제36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0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회계기관 선임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탄력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조성하는 것임³¹⁾.
- 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210880)을 통한 국가재정법에 관련 근거 마련을 전제로,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³²⁾에 따르면, 기금 신설의 타당성은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중·장기적으로

3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 다만, 돌봄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돌봄기금의 신설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³³⁾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동 제정안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7. 돌봄의 날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돌봄권 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35조).

제5장 보칙

제35조(돌봄의 날) ① 돌봄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돌봄권 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2023년 6월, 국제연합(UN)은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는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인지적이고, 장애포용적이며, 고령친화적인 돌봄 및 지원 체계를 조성하고,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2024년 10월 29일에 ‘돌봄 시스템 변화: 베이징+30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10월 29일을 돌봄 노동과 돌봄권을 공공재 및 인권으로 규정하는 글로벌 행동의 날로 활용하며 돌봄노동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해당 일을 계기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에 맞춰,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돌봄권 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³⁴⁾를 통해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의의가 큰 날 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거나 그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에 맞춰 돌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돌봄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 확립과 관련되어 있고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³⁵⁾도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재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3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 제4조의2(돌봄의 날) ①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돌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